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립공원구조대 편성·운영 근거 마련 〉
■ 임의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626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립공원구조대 편성·운영 근거 마련	2
※ 참고자료	6
1. 국립공원공단 구조대 개요	6
2. 최근 3년간 연도별 국립공원 구조대 구조 실적	7

I. 제안경위

2024년 12월 18일 임의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안은 2024년 12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통해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는 구조·구급 활동이 어려운 산악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지난 2024년 한 해 발생한 안전사고가 118건으로,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구조·구급 능력을 갖춘 구조대를 편성·운영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전문 국립공원구조대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립공원공단으로 하여금 탐방객 등 국립공원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구조, 구급 등을 전담하는 국립공원구조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응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Ⅲ. 검토의견

1. 국립공원구조대 편성·운영 근거 마련

개정안은 국립공원공단의 사업에 ‘국립공원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공원구조대의 편성·운영’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사업) 공단은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4. (생략) <u><신설></u> 5. ~ 13. (생략)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사업) ----- -. 1. ~ 4. (현행과 같음) 5. <u>국립공원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공원구조대 편성·운영</u> 6. ~ 14. (현행 제5호부터 제13호까지와 같음) 15. ----- <u>제14호</u> ----- ----- ----- 부 칙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문화경관 및 지형·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¹⁾ 설립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국립공원공단법」에 규정된 국립공원의 보전, 국립공원의 야생생물 보호 및 멸종위기종의 복원,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등²⁾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³⁾.

- 1) 「국립공원공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공원공단을 설립하여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문화경관 및 지형·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립공원 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국립공원공단법」 제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립공원의 보전 2. 국립공원의 야생생물 보호 및 멸종위기종의 복원 3.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4. 자연공원 자원에 대한 조사·연구 5. 자연공원의 청소 6. 자연공원 이용에 관한 지도·홍보
 7. 자연공원과 관련된 체험사업, 탐방해설 등 탐방프로그램의 개발·교육·보급 및 운영
 8.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공원의 생태계 영향조사·연구 및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
 9. 자연공원 보전·관리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
 1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그 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 책임기관) ① 법 제3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법인을 말한다.
4.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소관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그 지부·지사 등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법인을 포함한다)
- 「환경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5-54호) [별표]

재난관리책임기관 목록

연번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비상연락망(사무실)	지정일자
1	한국수자원공사	306-82-0047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042-629-2959	2025. 4. 1.
2	한국환경공단	137-82-07000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032-590-3234	2025. 4. 1.
3	국립공원공단	211-82-0654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22(반곡동)	033-769-9600	2025. 4. 1.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37-82-03566	인천광역시 서구자원순환로 170(백석동)	032-560-9318	2025. 4. 1.
-	이	하	여	백	-

이 중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암벽이나 고지대 사고 발생시 구조 등 국립공원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구조, 구급 등을 위하여 국립공원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총 2,417명을 구조하였음⁴⁾.

[국립공원구조대 인력 및 예산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인 력			2025년 사업 예산
합 계	특수산악구조대	탐방안전	
269	52	217	399

※ 출처: 환경부

[국립공원구조대 안전사고 구조인원]

(단위 : 명)

'22년	'23년	'24년	최근 3년간 합계
910	785	722	2,417

※ 출처: 환경부

다만, 국립공원 탐방객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인 구조대의 운영을 위하여 ‘국립공원구조대의 편성·운영’을 국립공원공단의 법정사업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긴급구조지원기관)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7. 그 밖에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7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별표 1에 규정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별표 1] **긴급구조지원기관**(제2조 관련)

18.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

4) <참고자료 2. 최근 3년간 국립공원 구조대 출동 현황>

[최근 3년간 연도별 국립공원 탐방객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단위 : 명, 건)

구분	'22년	'23년	'24년
탐방객 인원	38,793,952	39,455,363	40,655,814
안전사고 발생현황	131	119	118

※ 출처: 환경부

이에 개정안은 국립공원구조대의 편성·운영을 국립공원공단의 법정 사업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국립공원의 안전한 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입법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인 산림청에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8조⁵⁾에 근거하여 산악구조대를 편성·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⁶⁾.

문 의 처

02)6788-5541

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8조(산악구조대의 운영) ①숲길관리청은 등산인 등 숲길 이용자의 조난·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에 대비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악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6) 참고로,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공원사무소의 장도 산불예방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9729호)이 발의되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 참고자료

1. 국립공원구조대 개요

- **(설립목적)** 탐방객 안전사고 발생 시 구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
 - * 특수구조대는 ① 국립공원구조대 중 암벽·암릉 및 해상·해안 등에서의 탐방객 구조활동, ② 위험지역 관리, ③ 탐방객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2019년 별도로 편성
- **(특수산악구조대 제도 연혁)** 의무경찰 제도 폐지로 북한산 경찰산악구조대 철수('19.1)이후 위험지역 구조기능 유지를 위한 국립공원 특수산악구조대 창설
 - ('83.04.03.) 북한산 인수봉 대형 인명피해 발생(동사7, 동상11)
 - ('83.05.19.) 북한산 경찰산악구조대 창설(서울경찰청/북한(6),도봉(9))
 - ('19.01.30.) 의무경찰 전면 폐지에 따른 전원 철수(15명)
 - ('19.05.14.) 북한산 특수산악구조대 2개소(북한, 북한도봉) 창설(48명)
 - ('23.12.01.) 설악산 특수산악구조팀(TF) 신설
 - ('24.07.01.) '설악산 특수산악구조대' 정규 직제 반영(4명증원)
 - ('25.01.01.) 무등산 특수산악구조팀(TF) 신설
- **(국립공원구조대 인력 현황)** 특수산악구조대 52명 및 탐방안전 217명
 - * 특수 산악구조대 인력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 계	북 한	도 봉	설 악	무 등
인원	52	23	20	7	2

※ 출처: 환경부

2. 최근 3년간 연도별 국립공원 구조대 출동 현황

(단위: 건, 명)

구분	총계		2022		2023		2024	
	건수	출동인원	건수	출동인원	건수	출동인원	건수	출동인원
계	2079	5,169	896	2,080	718	1,822	465	1,267
지리산경남	117	300	48	131	45	107	24	62
지리산전북	45	106	14	36	21	49	10	21
지리산전남	43	113	16	40	13	39	14	34
경주	16	51	5	19	4	11	7	21
계룡산	74	171	33	73	24	54	17	44
한려해상	19	102	9	24	8	73	2	5
한려동부	3	5	1	0	1	2	1	3
설악산	416	972	205	362	103	266	108	344
속리산	36	98	15	40	10	29	11	29
내장산	26	61	16	39	9	19	1	3
내장산백암	8	18	6	14	0	0	2	4
가야산	20	69	6	24	8	28	6	17
덕유산	69	179	21	70	27	66	21	43
오대산	23	49	9	17	10	24	4	8
주왕산	22	69	8	14	7	17	7	38
태안해안	8	13	4	2	4	11	0	0
다도해해상	6	14	3	6	2	6	1	2
다도해서부	2	4	1	2	1	2	0	0
치악산	24	48	5	11	9	16	10	21
월악산	43	132	20	57	16	49	7	26
북한산	467	1,093	216	487	175	423	76	183
북한산도봉	301	768	136	371	91	238	74	159
소백산	5	22	2	4	2	7	1	11
소백산북부	23	56	10	28	11	24	2	4
월출산	63	163	20	37	18	41	25	85
변산반도	18	46	10	28	6	14	2	4
무등산	133	312	47	121	82	185	4	6
무등산동부	8	17	2	5	1	2	5	10
태백산	19	42	8	18	10	20	1	4
팔공동부	17	65	-	-	-	-	17	65
팔공서부	5	11	-	-	-	-	5	11

※ 출처: 환경부